



금산군의회
GEUMSAN COUNTY COUNCIL

2026. 2. 5.(목)

제 2 차 본 회 의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심 의 안 건

1.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금산군의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1호
----------	-----

2026. 2. 4.(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1. 22.
- 나. 제 안 자 : 김기윤 의원 등 6인
- 다. 회 부 일 : 2026. 1. 23.
- 라. 상 정 일 : 2026. 2. 4.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금산군의의회 의원 현원 변동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근거를 추가(안 제1조)
- 상임위원회를 3개에서 1개로 축소·개편하여 운영위원회만 존치(안 제2조)

- 상임위원회 개편으로 폐지되는 위원회 직무 및 소관 삭제(안 제3조)
- 복수 상임위원 규정 삭제(안 제4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에서 ‘둘 수 있다’ 로 개정하여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안 제7조)
- 기타 띄어쓰기 등 어색한 표현 수정(안 제8조,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개정안은 금산군의회 의원 결원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통합·축소하는 한편, 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측면에서 보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근거하여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 결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통합 역시 지방의회의 자율적 결정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상임위원회 통합·축소는 위원회 운영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집행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심사 기능 약화 우려가 있어, 향후 필요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보완적 운영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운영 사례와 부합하며, 예산·결산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아울러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성과 가독성 또한 향상된 것으로 보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 결원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충돌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